

의안번호	2210403
의 퇴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9.
추 계 번호	25F185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1억원, 2029년 2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68억원(연평균 2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의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(이하 ‘국적선사’)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향후 우수 선화주 개별기업별 해당 비중 추이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(안 제104조의30)	-21	-23	-24	-68	-2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0 (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요건: (현행) ①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40% 이상 ②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→ (개정안) ①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30% 이상 ② 삭제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4조의30 (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○ 개정안은 해상운송비용에서 국적 선사가 차지하는 비용의 비중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향후 우수 선화주 개별기업의 해당 비중 추이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동 추계에서는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과세기반이 되는 해상운송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전망(2024.10.)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
 - 향후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우수 선화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우수 선화주기업의 운송비용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비중은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
 - 2025년 세액공제는 2024년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와 수출입 물동량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추정
 - 2026년 이후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은 2025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, 수출입 물동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

- 한편, 개정안은 동 공제를 받기 위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의 국적선사 이용 비중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비중의 향후 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동 추계에서는 제외함
 - 국적선사 이용 비중 요건 완화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수 선화주 개별 기업의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 추이 등을 예측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(이하 ‘국적선사’)와 화주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적선사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
 -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의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이며,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, 운송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세액공제
 - 개정안은 동 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, 적용기한을 3년 연장

[표 2]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: 현행 및 개정안

구분	현행	개정안
공제대상	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	
공제요건	-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40% 이상 -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	-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이 30% 이상 - (삭제)
공제내용	-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 × 1% -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전년대비 증가분 × 3% ※ 공제한도: 당해연도 법인세의 10%	
적용기한	- 2025.12.31.까지	- 2028.12.31.까지

□ (공제실적)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세액공제 실적이 최초로 발생한 2021년 7억원에서 2022년 36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(잠정) 7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 - － 2024년의 경우,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운임하락 등으로 세액공제 실적이 크게 감소

[표 3]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: 2021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공제실적	7	36	24	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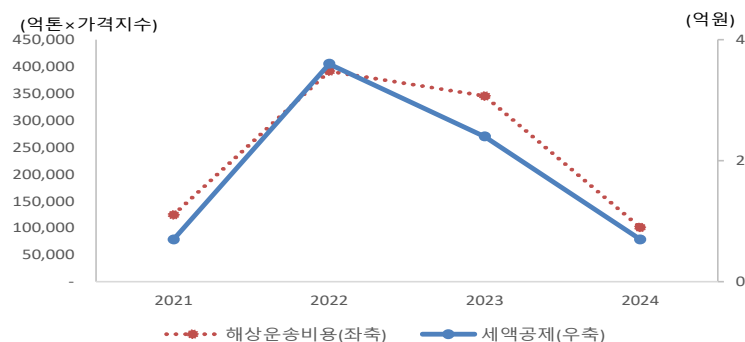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(2024.10.)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우수 선화주기업의 세액공제 실적은 해운의 수출입 물동량과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를 통해 산출한 수출입 해상운송비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
 - － 수출입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해운 수출입 물동량과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(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, 이하 SCFI 지수)의 연간 평균값을 곱하여 계산
 - － 세액공제 실적이 최초로 발생한 2021년 이후 세액공제 실적의 증감률과 수출입 해상운송비용 증감률은 높은 상관관계(0.972)를 보임
- ※ 단, 해상운송비용의 증감과 세액공제의 증감간의 시차(1년)를 감안하여 산정

[그림 1]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와 수출입 해상운송비용 추이



주: 수출입 해상운송비용은 연간 해운 수출입 물동량(억톤)과 SCFI 지수의 연평균 값을 곱해 산출
자료: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, 「해운화물통계」;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상운송비용이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(2024.10.)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5년 세액공제는 2024년 SCFI 지수 상승률 및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18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
 - ※ SCFI 지수(연평균): '23년 1,006 → '24년 2,506(전년대비 149.2% 증가)
 - 해운 수출입 물동량(억톤): '23년 10.05 → '24년 10.23(전년대비 1.8% 증가)
 - 2026년 이후 세액공제는 해운운임의 국제가격이 2024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, 수출입 물동량은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(2024.10.)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
 - ※ 단, 해상운송비용의 증감과 세액공제의 증감간의 시차(1년)를 반영하여 t년도 세액공제 증가율은 t-1년도 통관수출입의 증가율 전망을 적용하여 추정

[표 4] 향후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공제액 추정치	21	23	24
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(t-1년)	8.1	7.4	7.3

주: 통관수출입 증가율 전망치는 통관수출 증가율 전망과 통관수입 증가율 전망을 합산하여 추정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(3) 추계결과

-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1억원, 2029년 24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68억원(연평균 2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의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 사업자(이하 '국적선사')에게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향후 우수 선화주 개별기업별 해당 비중 추이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(안 제104조의30)	-21	-23	-24	-68	-23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